

제 3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제12조 (계약목적)

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수급자(보호자)의 서비스 이용 결정권과 기관의 서비스 제공 내용에 관한 부분을 명확히 고지함으로써 이용자는 선택권과 알권리를 충족하고 기관은 계약된 급여의 질을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13조 (이용계약자)

계약은 수급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수급자의 가족,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.

제14조 (계약기간)

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.

- ①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수급자의 인정유효기간을 기본으로 한다.
- ② 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재계약 할 수 있다.

제15조 (서비스 제공일과 시간)

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와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반영한 주 7일 06:00~24:00 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,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일정과 시간은 신축성 있게 변경 운영될 수 있다.

제16조 (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-2026년 기준)

- ① 본 기관에서 서비스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.

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						(단위 : 원)
등 급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	인지지원 등급
재가급여 월 한도액	2,512,900	2,331,200	1,528,200	1,409,700	1,208,900	676,320

2026년 장기요양 급여비용					(단위 : 원)
방문요양(방문당)			구 분	금액(원)	
가-1	30분	17,450	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 부담금을 제외한 100%중 85% 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	85%	
가-2	60분	25,320			
가-3	90분	34,120			
가-4	120분	43,430			
가-5	150분	50,640			
가-6	180분	57,020			
가-7	210분	63,530			
가-8	240분	70,080			
방문목욕(방문당)			본인 부담금	15% 대상자는 보험공단이 85%이고 개인 부담금이 15%임	
나-1	차량이용(차량 내)	88,990		9%, 6% 대상자는 의료급여수급자, 경감대상자임	
나-2	차량이용(가정 내)	80,230		0%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면제	
나-3	차량 미이용	50,100			

- ② 월 이용료 외 다음에 명시한 그 밖의 비용(비급여)은 대상자(보호자)가 전부 부담한다
 - 1. 수급자(보호자)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
 - 2.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급여제공 중 계약내용에 해당 되지 않는 기타 비용
 - 3.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

제17조 (이용절차)

-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서비스 의뢰를 받는다.
- ② 의뢰를 받은 기관은 수급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사정하고 상담 일지, 정보제공동의서, 서비스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.
- ③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으로 본인 또는 타인이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토록 한다.

제18조 (계약 시 구비서류)

계약 당사자는 이용계약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한다.

- ①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 1부
- ② 장기요양인정서 1부
- ③ 수급자 및 보호자 개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1부
- ④ 급여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.

제19조 (신원인수인 권리 및 의무)

신원인수인이란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말하며, 신원 인수는 수급자의 주민등록증 등으로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와 정보를 수급자 및 보호자가 기관에게 확인시켜야 할 의무와 권리를 말하며, 기관은 이를 인계하여 수급자 관리에 의무를 다한다.

-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
 - 1.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
 - 2.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정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 - 3.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
 - 4. 수급자가 급여계획에 따라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
 - 5. 수급자는 급여계획에 따라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
 - 6.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,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 - 7. 사생활이 존중되고 비밀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권리
-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
 - 1. 대상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
 - 2.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
 - 3.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
 - 4.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 (해외이주, 금치산 또는 파산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 발생시)
 - 5.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

제20조 (수급자 의무)

- ① 월 이용료(본인부담금) 납부 의무
- ②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
- ③ 서비스 개시 전 수급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 의무
- ④ 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해야 하는 의무
- ⑤ 수급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(수급자)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 하여야 한다.(미 설명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)
- ⑥ 단, 담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자, 보호자 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.
- ⑦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, 집기 등의 오손, 파손, 멸실에 관한 원 상회복 의무

제21조 (기관의 의무)

- ① 기관의 의무
 - 1. 『수급자』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
(단, 병원 입원 시는 급여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)
- ② 『수급자』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
(단,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)
- ③ 장기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과 행정관리 업무의 의무
- ④ 기관은 수급자의 상태나 욕구에 따라 지역사회 자원을 연 1회 이상 연계할 수 있다.

제22조 (수급자 및 보호자 관리)

- ① 정기적으로 내방상담 또는 전화상담, 방문상담(월1회), 상태변화기록지(주1회 이상) 등을 통 해 관리를 실시한다.
- ② 기관은 수급자의 욕창위험도, 낙상위험도, 인지기능검사, 욕구사정, 급여제공계획서 등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.
- ③ 서비스제공시간 및 횟수변동,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으로 급여비용 기준이 변동되거나 수급 자의 본인부담률이 변경된 경우 변경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각1부씩 보관한다.
- ④ 기관은 매월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는 월1회, 급여제공기록지는 수기발생시 주1 회, 100% 전송은 월1회분을 발부한다.
- ⑤ 사망, 타 기관 이용 등의 경우 관리에서 제외한다.

제23조 (계약의 해제)

- ① 이용규칙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·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이라 도 계약을 종료 및 해제할 수 있다.
- ② 기관은 수급자가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.
- ③ 수급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
- ④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감 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
- ⑤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
- ⑥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
- ⑦ 이용료(본인부담금)을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경우

- ⑧ 폭행, 욕설,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,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